

운영규정 개요

신설 2022.07.01.
개정 2023.01.01.

제 1 장 기본

2023.01.01. 기준

기관명	효벤티 요양원	설치일자	2022.07.01
급여종류	노인 요양 시설 급여	입소정원	119 명
대표자	박 은 영	협력이료	안성현대요양병원
주 소	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128		
비급여 항목	식사재료비 + 간식비	3,000 원 (1식) , 1000 원	
	상급침실 비용(1달 기준)	2인실	100,000원
		1인실	200,000원
시설규모	건물면적 589.71 m ² , 연면적 2,987.79 m ²		

제 2 장 명칭

본 기관의 명칭은 “효벤티요양원”(이하 시설)라 하며,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(법률제8403호, 제정2007.427)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(시설급여)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.

제 3 장 목적

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,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.

또한,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“효벤티요양원”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조 기관원칙 및 기관운영

“효벤티요양원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명시한 부분에 적용하며,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, 조례 및 운영위원회 및 직원회의 건의 등을 채택하여 기본원칙으로 한다.

제 2조 입소정원

-정원 119명

제 3조 소재지 및 정보

주소	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128		
연락처	031-676-0110	팩스번호	031-676-1222
홈페이지	http://www.hvent.kr/		

제 4조 시설 배치 구분

구분	배치										
시설	침실	사무실	요양보호 사실	자원봉사 자실	의료(간호 사실)	물리치료 작업실	프로그램 실	식당/조리	화장실	세면장/목욕실	세탁실
	47	1	4	1	4	1	1	-	29	4	3

제 4 장 사업내용

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내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.

- ㉓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,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.
- ㉔ 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도록 지원한다.
- 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.
- ㉖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킨다.
- ㉗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.
- ㉘ 상담서비스: 전화, 내방
- ㉙ 의료 및 간호서비스 : 건강 체크, 투약관리,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
- ㉚ 재활 서비스: 정기적 운동치료, 물리치료,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
- ㉛ 급식서비스: 식사 3회, 간식 1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
- ㉜ 위생서비스: 이*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
- ㉝ 일상생활서비스: 대*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
- ㉞ 심리*사회증진서비스: 음악활동, 인지활동, 미술활동, 원예활동, 레크리에이션활동 등을 통한 심리*사회적 기능회복 유도
- ㉟ 정서지원 서비스: 위안잔치, 나들이,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
- ㊱ 프로그램 개발사업: 홍보, 가족간담회 및 운영간담회, 직원교육, 자원봉사자 교육활동 등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
- ㊲ 사례관리: 대상자에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.
- ㊳ 기 타: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

제 5 장 업무분담

본 시설의 직급별 업무분담은 종사자 책임규정의 업무분장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6 장 입소자

제 1조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

1. 입소정원: 119명 (남*여)
2. 모집방법:

- ㉓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

㉔ 장기요양기관 대장자 우선 모집

㉕ 보호자를 통한 모집

㉖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

3. 입소대상자

㉗ 장기요양등급 1~5

㉘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

4. 입소 시 구비서류

㉙ 이용신청서 1부

㉚ 장기요양 인정서류(등급외자 제외)

㉛ 주민등록등본 1부건강진단서1부(결핵검진 포함)

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

㉝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1부

㉞ 코로나19 음성확인서

㉟ 기존 질환에 따른 소견서(처방전)

5. 입소절차

- 초기면접: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어르신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
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.
- 입소계약: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.
- 입소 및 생활안내: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*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*의무 및 입소생활에 대해 안내한다.

6.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

- 입소 어르신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.
- 입소 어르신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입소 어르신은 외출,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.
- 입소 어르신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,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- 입소 어르신의 외출,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(인솔자)의 책임으로 한다.

7. 입소자의 책임

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.

- ㉗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- ㉘ 급여제공계약서(표준약관)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.
- ㉙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㉚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,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㉛ 혐오물품,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 소지할 수 없다.

제 7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, 계약기간, 계약해제, 신원 인수인의 권리*의무, 월 이용료,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계약목적: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.
2. 계약기간: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(해당년도)
 - ㉗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,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, 계약기간은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.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시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㉔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.
- ㉕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.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.)
- ㉖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 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
제 8 장 계약해제

- ㉗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㉘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- ㉙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혹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퇴소 처리 한다.
- ㉚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)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㉛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- ㉜ 이용자의 이용료의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)
- ㉝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가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.

제 9 장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1. 본인부담금

- ㉗ 1등급~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%를 부담한다.
- ㉘ 1등급~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각 부여한 금액을 부담한다.
- ㉙ 1등급~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.
- ㉚ 등급외의 자는 다음과 같은 ADL평가점수 등으로 의거하여 입소비용을 차등 부여한다.

2.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

- ㉗ 식사재료비 또는 식비: (1일(3식)*3,000원*30일 기준 = 270,000 원)
- ㉘ 간식비: (1일(1회)*1,000원*30일 기준 = 30,000 원)
- ㉙ 상급침실 이용료, 개인 간식 등 :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.
1인실: 200,000원 (월 이용료), 2인실: 100,000원 (월 이용료)
-단,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상급침실로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하지 않습니다.
- ㉚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.
- ㉛ 특별보호 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.(감염병 외 발생하는 기타 징후에 대한 특별 보호)

3.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,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7일전에는 통보한다.

4. 비용에 대한 변경

- ㉗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을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(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)

5. 변경절차

- ㉗ 본인부담금 변경절차(이용 수가 변동시 포함)

-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 실시 -> 보호자 상담 -> 재계약

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

- 물가의 변동(식비) -> 보호자 상담 -> 재계약

- 안전 관리

6.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

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입소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입소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제 10 장 배상책임보험*면책

1.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

㉔ 시설은 영업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에 가입을 의무화하며, 재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영업배상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.

㉔ 보호자는 시설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소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. 천재지변 및 사면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 및 사망 등의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단, 시설장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배상할 수 있다.(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부분 추가함)

2. 건강관리

㉔ 건강관리와 진료

㉔ 진료: 격주 1회 촉탁의사의 정기 진료를 받는다.

㉔ 투약: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하며, 의사의 지시 없이는 투약할 수 없다.

㉔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는다.

㉔ 입소자의 건강 생활을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다.

(단,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별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시하도록 한다.)

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.